

■ 법률 칼럼

2021년 드림러 법안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된 2021년 시민권 법안(Citizenship Act of 2021)에 관심이 집중되는 바람에 2월 4일에 상정된 2021년 드림러 법안(The Dream Act of 2021)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하여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상정했던 드림러 법안과 동일한 것입니다. 국경 장벽 설치, 이민 축소 등과 연계되어 논의되었던 관계로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그 법안을 2월 4일에 민주당의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그램 상원의원의 공동 발의로 다시 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좀더 포괄적인 불체자 구제안을 다루고 있는 시민권법안에 밀려서 덜 관심을 받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고 드림러 청소년들의 영주권 부여까지 포함된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기존 낱자(최초 입국일/서류 미비가 된 날짜)를 맞추지 못해 DACA를 신청하지 못했던 많은 드림러들도 임시 신분을 획득한 후에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인 2021년 시민권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드림러 법안같이 합의가 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이 칼럼에서는 법안을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임시 영주권 취득 조건입니다.

- 1. 드림러로서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18세 미만 즉 17세 또는 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 2. 신청인은 법안이 통과된 날짜를 기준으로 미국에 최소 4년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해서(Continuously)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 3. 지문 검사를 통해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원조회를 통해 중범죄(1

년 이상 감옥에 갈 수 있는 범죄) 또는 경범죄 3회 이상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좋은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4.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최소한 고졸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검정고시 (GED) 준비자도 고등학교 재학과 동일하게 취급).

두 번째 부분은 임시 영주권이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면 바로 영구 영주권자가 됩니다.

- 1. 미국 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 2. 다음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 1)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해 전문대 학위를 취득했거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4년제 대학교에서 현재 2년 이상 공부를 마친 경우 또는 이보다 더 높은 학위를 받은 경우 (Education Track)
 - 2) 군대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Military Track)
 - 3) 총합계로 3년 이상 취업한 경우 (Work Track)
- 3. 영어/역사 공민 시험 통과
- 4. 위와 동일한 신원조회 통과(좋은 도덕적 품성)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법안에 DACA의 "2012년 6월 15일 이전" 처럼 신분을 잃은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입법이 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법이 통과된 후에 신분을 잃은 경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 통과 전에 조울 과정에서 보완될 부분이므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오션사이드(Oceanside)

차를 타고 달리고 싶을 때가 있다. 그렇다고 장시간 운전하기는 싫다. 그럴 때 딱 좋은 곳이 있다. 오션사이드(Oceanside). 오픈지카운티에서는 50분 정도, LA에서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안내한다.

LA에서 5번 사우스를 타고 어바인, San Juan Capistrano, San Clemente를 지나 샌디에고카운티가 시작되고 잠시 지나 Oceanside Harbor Dr.에서 내린다. Harbor Dr.를 만나면 우회전, 이때 1차선으로 들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곧바로 만나는 Carmelo Dr.에서 좌회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길 이름이 San Luis Rey Dr.로 바뀐다. 그대로 길 따라 진행하면 커다란 주차장이 나온다. 여기에 주차하고 바다 방향을 바라다보면 작은 터널이 보인다. 터널 입구에는 통행금지 표시판이 있다.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람은 통과해도 좋다. 터널을 나오면 요트 선착장이 보이고 식당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오른쪽 2층 식당은 주로 밤에 야경을 감상하며 식사를 하는 편이 좋고, 왼편의 첫 번째 식당은 아침 식사를 하기에 좋다. 선착장을 오른쪽에 두고 길 따라 걷는다. 바다가 보인다. 걷기 싫으면 여기까지. 그러나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왼편을 보라. 오션사이드 피어가 보인다. 피어까지 걸어서 30분, 왕복 1시간이면



▲ 요트 선착장

충분하다. 갈 때는 모래를 밟으며 걷고, 올 때는 주먹가나 도심을 통과해도 좋다. 여유가 있다면 피어에서 곧장 도심을 향해 걸어 나가서 오션사이드 시티홀 투어를 추천한다. 하얀 건물과 분수가 어우러져 휴양 도시의 분위기와 잘 맞는다. 계절에 상관없이 추천하나 바다는 역시, 여름바다 아닐까 싶다. 특히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고 싶은 분은 여름이 좋다. 1시간부터 반나절, 한나절 배를 타고 즐길 수 있다. 터널을 나오자마자 왼편 첫 번째 건물에서 선박 탑승권을 판다.

오션사이드 시티 홈페이지에 가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도 좋다.

■ 오션사이드 시티 홈페이지
www.ci.oceanside.ca.us/



▲ Oceanside, CA Marina 전경. 바다와 백사장, 야자수,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타운뉴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